

◆ D-54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1.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1) 원 칙 :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0.7.1 단서추가)

(2)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 ① **작업시간중 사고** : 담당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중의 재해, 용변등 생리적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부수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 ② **작업시간외 사고**: 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생리행위중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관리소홀로 기인한 재해, 천재지변등의 사고,
- ③ **휴게시간중 재해**(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신설)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확대 (예: 같은부서 또는 구성원끼리 족구 또는 배구경기를 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 ④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귀향버스 이용중재해도 포함)
- ⑤ **출장중의 재해**(회사 --> 출장지 --> 회사 또는 자택도착하는 전과정)
 - 출장도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근로자의 사적행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은 제외함.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로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 ⑥ **행사중 사고(2000.7.29개정)**
 -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 ㉡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결재가 아니니 구

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

④ 기타 이에 준하는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참여(사전보고여부, 비용부담, 행사 목적, 운영방법 고려하여 판단)

⑤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경비등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⑦ 기타사고

- 타인의 폭력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발생경위 및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
-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한 행위중 발생한 재해

2. 업무상 질병

(1) 산재법 제33조(업무상질병)

(1)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인정기준 및 판정지침

① 뇌출혈(뇌실질뇌출혈포함),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동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기인성 인정요건

- ① 발생상태를 시간적 및 장소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상상태(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등, 현저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 ②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상 특정요소나 과로에 의한 때 --> 발병전 1주간의 업무로 판단, 과중성여부는 업무량, 시간, 강도, 작업환경, 건강정도, 신체조건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
- ③ 과중부하를 받은 후 증상의 출현까지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통상 24시간이내)으로 타당한 때
- ④ 통상업무를 장시간 수행함으로써 만성적인 정신적·육체적과로가 유발된 때 -->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입증

- ㉔ 업무수행중 뇌실질뇌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 또는 사망한 원인이 업무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때
- ㉕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질병의 자연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사망한 때

(2) 사고성 요통

- 업무수행중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하여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요통
-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3) 사고성이 아닌 요통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3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 20kg이상을 1/2이상 취급)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5년이상)근무한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다만, 변형성척추증, 골다골증, 척추분리증, 척추체전방위증, 추체변연융기등 퇴행성척추변화로 인한 질환은 제외)

(4) 기타 직업성 질병(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

- 물리적인자, 이상기압(잠수, 잠함실내, 고공작업), 소음성난청(85dB이상 소음에 3년이상 노출), 진동장해(착암기), 염화비질, 망간, 연, 연합금, 수은, 아말감, 크롬, 카드뮴, 벤젠,지방족, 트리클로로에틸렌, 이황화탄소, 석면으로 인한 중독 또는 속발증